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//www.motie.go.kr

2014년 5월 2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정책기획팀 임기성 과장(044-203-4610), 최윤석 사무관(4612)
산업물류투자팀 정재남 과장(044-203-4630), 서성민 사무관(4631)

경제자유구역법에 '네거티브 규제 방식' 도입
'입주 허가 제도' 폐지 등 자유무역지역법 전면 개정 추진

- 산업통상자원부『제3차 규제 청문회』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(日) 오후 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**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『제3차 규제 청문회』를 개최**하였음

* 4.20일 1차 규제 청문회(분야 : 법정 인증제도 개선), 5.11일 2차 규제 청문회(분야 : 무역투자분야 규제 개선) 개최

<제3차 규제청문회 개요>

- **일시/장소** : **5.18(일) 14:00~16:00** / KOTRA 세미나실
- **참석** : (청문위원) 제1차관, 기획실장,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, 이종영 중앙대 교수, 최열 부산대 교수, 황재훈 충북대 교수
 (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담당) 산업부 실·국·과장, 관련 민간전문가 등
- **주요내용** : 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규제개선방안, 관련분야 규제신문고 건의사항

□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「경제자유구역」과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「자유무역지역」은 **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적으로,**

* 경제자유구역 :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조성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'03년 첫 지정 이후 현재 8개 구역을 운영 중(인천, 부산진해, 광양만권, 대구경북, 새만금, 황해, 동해안, 충북)

** 자유무역지역 : 관세 유보 등을 통한 무역진흥을 위해 '70년 마산 자유무역지역 첫 지정 이후 현재 13개 지역(산단형 7개, 공항만형 6개)을 운영 중

○ 이번 청문회에서는 **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,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**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**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**

□ 열띤 토론 끝에 **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중 17건을 폐지(29%)하고, 11건을 개선(18%)**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**규제감축 목표(20%)를 초과**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



□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 **경제자유구역 분야**에서는 **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,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**하기로 하였음

○ 그간 **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**시 **'경미한 사항'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**하는 '**포지티브 방식**'이었으나,

- 향후 **'중대한 사항*'**에 대해서만 **산업부 승인**을 거치고 **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로 위임**하는 **'네거티브 방식'**으로 **전환**할 계획임

* 예시 : 재원조달방법 중 국비가 증가하는 경우, 외국인 전용 학교·의료기관 등의 설치 등

○ 개발사업시행자의 **부담을 경감**하고 **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**하기 위해 **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**할 예정임

*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%이상인 경우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 면제, 주민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도록 추가 등

○ 아울러, 경제자유구역을 **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**하기 위하여 **교육·의료·관광 분야의 '덩어리 규제'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**해 나가기로 하였음

□ 한편,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**'70년**에 제정된 **자유무역지역법**을 **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·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음**

○ 자유무역지역 **입주방식**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**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입주허가**를 폐지하고,

-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**동등한 관계**에서 **입주계약을 체결**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련 **절차를 감축**

○ 또한, 환경변화에 따라 **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**이 **수출 중심**에서 **중계·가공무역 중심**으로 **전환**됨에 따라,

-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·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**물품의 반입·반출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함**

□ 산업부는 **금년중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**들은 **최대한 조속히 처리**하고, **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**들은 **금년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**을 추진할 예정

○ 이를 통해, **경제자유구역**은 **개발계획 변경 절차 단축***으로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하여 **관련 비용의 절감****과 **외투유치 확대 등이 기대되며,**

*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수는 연평균('11~'13) 14건으로, 네거티브 변경시 연평균 9건으로 감소(40%↓) 전망

** (예)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 6개월 단축시 금융 비용 등 약 175억원 절감 가능(이자율 3.5% 가정)

○ 자유무역지역은 **입주방식 전환(허가→계약)**으로 **기업의 편의가 제고**되고, **물품의 반입·반출 절차 간소화** 등으로 **중계·가공무역 전진기지의 역할이 강화**될 것으로 기대

□ 산업부는 지난 **1차 청문회**에서 **'법정 인증제도 개선'**을, **2차 청문회**에서 **'무역·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'**을 주제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,

○ 금번 **3차 청문회**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개발자, 입주기업들이 **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**

○ 앞으로도 산업부는 **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**하여 일자리 창출형 **덩어리 규제*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**해 나갈 계획임

* 예)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관련 규제완화,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

○ 다만, **안전과 관련된 규제**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**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**해 나갈 방침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팀 최윤석 사무관(☎ 044-203- 4612), 산업물류팀 서성민 사무관(☎ 044-203-46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 산업부『제3차 규제 청문회』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**주요 덩어리 규제**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여부 검토 및 집중적인 논의로 개선방안 도출

○ 규제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

□ 회의 개요

○ 일시·장소 : **'14.5.18(일), 14:00 ~ 16:00 / 코트라(IKP) 1층 세미나실**

○ 참석 : 청문위원 7인, 규제 담당자*, 민간전문가 등 30여명

* 무역투자실장, 담당 국·과장 등 20여명 참석

【청문위원】
(공공) 김재홍 제1차관(주재), 한진현 제2차관, 박청원 기획실장
(민간) **김문겸** 중소기업옴브즈만, **이종영** 중앙대 교수
최열 부산대 교수, **황재훈** 충북대 교수

○ 안건 : **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규제개선방안**, 관련 신문고 건의사항

□ 진행 순서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4:05	**(5분)**	**▪ 모두 말씀**	1차관
14:05~14:45	**(40분)**	**▪ [세션1] 경제자유구역 개선방안**	
14:05~14:15	(10분)	·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	경자단장
14:15~14:45	(30분)	· 토론(참고인 : 민간전문가) 및 의결	
14:45~15:25	**(40분)**	**▪ [세션2] 자유무역지역 개선방안**	
14:45~14:55	(10분)	·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	경자단장
14:55~15:25	(30분)	· 토론(참고인 : 민간전문가) 및 의결	
15:25~15:55	**(30분)**	**▪ [세션3]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내용**	
15:25~15:35	(10분)	· 신문고 건의 및 답변내용	경자단장
15:35~15:55	(20분)	· 토론 및 의결	
15:55~16:00	**(5분)**	**▪ 마무리 말씀**	1차관

첨부 2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규제 폐지 목록

1. 경제자유구역 관련 폐지 규제 (총 8건)

규 제	현 행	폐지(개선) 사유	조치 시기
①개발계획변경 (시행령 5조의2)	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	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중요한 사항 이외에는 시도지사로 위임	2015
②개발이익의 재투자 (법 9조의8, 시행령 11조의5)	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25% 재투자 의무	이중부담문제로 폐지 (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25%환수)	2015
③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공급(법 9조 5항)	실시계획에 외투기업 전용 용지 공급방안 반영	불필요한 규제 폐지 (외투기업 수요에 따른 희망부지 제공)	2015
④농지법에 관한 특례 (경자구역법 9조의6)	농지전용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	불필요한 규제 폐지 (이미 농지법상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)	2015
⑤경자구역 개발사업의 착수(법 12조)	실시계획 승인 이후 1년이내 개발사업 착수	기존 법조항에 의해서도 사업 착수 지연 방지 가능 *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	2015
⑥퇴출업종의 고시 (법 29조, 시행령 30조)	산업부 장관이 경자구역내 환경 유해 업종 등 퇴출업종 고시가능	퇴출업종은 개발계획이나 환경법 등 타법령 등에 의해 규제 가능	2015
⑦경자구역 연접지역 개발시 협의 (법 7조의4)	경자구역으로부터 2㎞이내에 산단조성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	연접지역 개발시 산입법 등 타 법률에 따라 필요한 협의가 이루어져 규제 실익이 크지 않아 폐지	2015
⑧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의무(법 24조의2)	단위개발사업지구내 일부 주택용지(총 주택수의 1~10%)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	주택임차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폐지 (최근 시장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여 외국인의 주택임차에 애로 없음)	2015

2. 자유무역지역 관련 폐지 규제 (총 9건)

규 제	현 행	폐지(개선) 사유	조치 시기
①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(법 11조, 시행령 8조, 시행규칙 3조)	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자유무역지역 입주가능	입주계약으로 방식 전환	2014
②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준수사항(법 13조, 시행규칙 3조)	입주허가를 받은 기업은 기한 내 임대차계약, 사업시설설치, 건축허가 등을 해야함	입주계약으로 방식 전환	2014
③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취소(법 15조, 시행령 9조, 시행규칙 5조·7조)	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, 잔여물품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	입주계약으로 방식 전환	2014
④자유무역지역 공장 등의 임대 및 양도 제한(법 24조, 시행령 15조)	외국물품등으로 건축한 공장 등은 3년간 입주기업체에게만 임대·양도 가능	기간제한 없이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에게도 임대·양도 가능하도록 개선	2014
⑤자유무역지역 토지의 분할면적(법 25조)	입주업체가 토지를 분할할 경우 1,650㎡이상으로 분할해야 함	업종별 특성에 따라 토지를 활용하도록 토지분할면적 제한 폐지	2014
⑥자유무역지역 입주 결격사유(법 12조)	입주 결격사유 규정(피성년후견인, 파산, 실형 집행중인자, 체납자 등)	폐지하고 꼭 필요한 규정은 입주자격과 통합	2014
⑦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의무(법 38조)	입주업체는 보유물품의 품명, 규격, 수량, 가격, 보수작업의 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해야 함	물품 반출입 신고를 통해 재고조사가 가능하므로 폐지	2014
⑧자유무역지역의 출입(법 52조, 시행규칙 15조)	자유무역지역에 출입할 경우 출입증·통행증을 부착해야 함	물품관리는 물품의 반출입 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므로 폐지	2014
⑨자유무역지역 출입제한(법 53조)	세관장은 관리권자에게 출입증·통행증의 발급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	공문 등 행정협조를 통해 출입 제한 가능	2014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